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3 - 8호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3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인천광역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자립생활센터 운영규정 변경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원업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 명확화 (안 제3조)
- 다. 예산 지원 등 사업지원 강화 (안 제6조)

라. 자립생활센터 사업의 명확화 및 운영기준 변경 (안 제3조)

마. 지역사회 전환 지원 (안 제15조부터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2, 팩스 032-440-8764, 이메일 insuk33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병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25
----------	-----

발의연월일 : 2013. 3. 19.

발 의 자 : 강병수·박순남·정수영

박승희 의원 (찬성자: 13인)

1. 제안이유

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인천광역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자립생활센터 운영규정 변경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원업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명확화 (안 제3조)

다. 사업지원 강화 (안 제5조)

라. 자립생활센터 사업의 명확화 및 운영기준 변경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지역사회 전환 지원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 스스로가 삶을 선택하고 타인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4.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말한다.
5. “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일정 기간 자립생활의 최초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주공간을 말한다.
6. “자립주택”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지원하는 거주공간을 말한다.
7. “주거지원서비스”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주거와 그 주거 내·외 환경개선 서비스를 말한다.
8.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제4조(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인천지역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2. 주거환경 개선
3.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4.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
5.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홍보
6. 취업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7.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지원
8. 중증장애여성의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
9.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제6조(자립생활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자립생활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계획
2.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실태 조사 및 평가
3. 그 밖에 중증장애인 복지 관련사업

② 시장은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제7조(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설치)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조직과 운영)** 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장애인 복지 또는 사회 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또는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② 센터 직원은 과반수 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센터장을 제외한 상근직원의 4분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구성한다.
- ③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자립생활 사례관리
2. 자립생활 기술훈련
3. 활동지원급여
4. 자립생활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5. 동료상담 및 정보제공·의뢰
6. 자립생활 체험홈사업
7.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서의 권익옹호 활동
8. 주택 개·보수 사업
9. 정보제공 활동
10.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의 자립 지원
11. 그 밖에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사업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과 사업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사업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4. 센터 운영 규정 등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지역사회와의 관계) 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예산

제13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센터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생계보조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시설 및 단체는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장 지역사회 전환

제15조(시설의 자립생활 교육 의무) 시장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시장은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한다.

제17조(자립주택 및 초기정착금 지원) ① 시장은 체험홈 이용을 마친 중증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정착을 준비하며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주택 등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시장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초기정착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8조(사업의 우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특성
2.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3. 그 밖에 시장이 우선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9조(사업의 평가) 시장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 제31조(실태조사) -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2조(정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 민법 -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제4조(등록)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

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등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13조(예산의 지원)

- 자립생활 지원과 자립생활지원 센터 지원
- 생계보조수당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추진사업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고
자립생활 지원센터(국비)	4개소	-	-	-	-	
자립생활 지원센터(시비)	2개소	4개소	-	-	-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5개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	
자립생활 주택 설치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출산, 육아 지원서비스(국,시비)	1식	1식	1식	1식	1식	
퇴소자 자립정착금	-	10명	20명	20명	20명	
생계보조수당	1식	1식	1식	1식	1식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추진사업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고
자립생활 지원센터(국비)	240,000	240,000	240,000	-	-	국비
	360,000	360,000	360,000	-	-	시비
자립생활 지원센터(시비)	120,000	360,000	360,000	-	-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102,500	102,500	102,500	102,500	102,500	전세보증금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60,000	72,000	84,000	96,000	108,000	개소당 12백만원
자립생활 주택 설치	102,500	102,500	102,500	102,500	102,500	전세보증금
출산, 육아 지원서비스 (국,시비)	49,700	49,700	49,700	49,700	49,700	국비
	21,300	21,300	21,300	21,300	21,300	시비
퇴소자 자립정착금	-	50,000	100,000	100,000	100,000	
생계보조수당	2,632,000	2,632,000	2,632,000	2,632,000	2,632,000	

다. 재원조달방안

- 자립생활 지원센터 : 국비 40%, 시비 60%
- 출산, 육아 지원서비스 : 국비 70%, 시비 30%
- 기타 : 시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의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계
세입	국비보조	289,700	289,700	289,700	49,700	49,700	968,500
	소계	289,700	289,700	289,700	49,700	49,700	968,500
세출	국·시비	3,688,000	3,990,000	4,052,000	3,104,000	3,116,000	17,950,000
	소계	3,688,000	3,990,000	4,052,000	3,104,000	3,116,000	17,950,000
재원 조달		국·시비	국·시비	국·시비	국·시비	국·시비	
국 비		289,700	289,700	289,700	49,700	49,700	968,500
시비	소 계	3,398,300	3,700,300	3,762,300	3,054,300	3,066,300	16,981,500
	일반회계	3,398,300	3,700,300	3,762,300	3,054,300	3,066,300	16,981,5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